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나54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나548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21413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법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박형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현철

변론 종결 2023. 7. 13.

판결 선고 2023. 8.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21413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2. 1. 19. 접수 제3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37년생으로 E과 사이에 F(장녀), G(차녀), 피고(1남)를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2. 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22. 1. 19. 보호자인 F에게 연락 없이 요양병원에서 원고를 데리고 나가 원고 인감도장을 새로 발급받고 원·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알츠하이머 환자인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서명만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 1) 본안전 항변 F는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2) 본안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에 의하면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도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F가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2022.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으로 법무사 D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에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D을 선임한다는 사전처분 및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 또는 별소제기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처분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이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서 2023. 2.

16. 제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코러스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재차 선임하면서 항소제기 및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종전 주장을 포함하여 종전 변론결과를 이의 없이 진술함으로써 기존 소송행위 전부를 묵시적으로 추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기존 소송행위가 무권대리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인에 따라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 및 항소의 제기는 모두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5,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원고는 2022. 1. 19.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당시 원고는 분당구 H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본인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I이 작성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② 원고는 같은 달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의 면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받고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③ 위 법무사 I은 당시 성남시 H행정복지센터에서 원고로부터 증여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④ 피고와 원고 및 E 사이의 2022. 4. 3.자 및 2022. 11. 8.자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태

판사이은희

판사이국현

별지